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6. 5.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억 10백만원
임 원	○ 문책경고 1명 ○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견책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전주동부신협은 2022.2.18.~2023.4.19. 기간 중 甲 등 5명에 대하여 5건, 13억 8백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상*이 아닌 부모, 배우자 등 가족 6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등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52조, 제57조, 제69조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44조, 제51조

(2)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신용협동조합 여수산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업무 처리시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및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주동부신협은 2021.1.27.~2021.7.26. 기간 중 차주 유한회사 A 및 B에 대하여 보통대출 3건, 7억 5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가)~(나)와 같이 차주의 신용상태 등 비재무항목을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상환능력 분석 및 사업계획 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검사착수일 기준 5억 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23.6.30. 기준 납입자본금(155억 91백만원)의 3.2%

(가) 차주 유한회사 A에 대한 대출 관련

전주동부신협은 2021.6.30. 및 2021.7.26. 유한회사 A에 근린상가 4개 호실(101호~104호)을 담보로 하여 보통대출 각각 3억원(담보:101호, 102호) 및 3억 37백만원(담보:103호, 104호)을 해당 상가 구입자금(분양자금) 용도로 취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주동부신협은 차주가 대출취급일 직전에 2021.4.8. 설립된 신설법인임에도 신용평가를 하면서 별도의 검토 및 근거자료 없이 일부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였고, 동 대출로 취득하는 담보물건이 2018.2.2. 사용승인을 받은 후 3년간 미분양 중인 상가임에도 사업계획서 징구 없이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 분석 및 사업계획 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 재무정보가 없었음에도 추가적인 차입여력, 자금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하여 자금조달 능력을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신규기업임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정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판매안정성도 '보통'으로 평가

** 차주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이 요식업임에도 사업계획서 없이 동 담보물건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상환재원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출취급 이후 공실상태 지속

해당 대출은 2022.5.3. 및 2022.4.27.에 연체가 시작되었고 검사착수일 현재 3억 86백만원의 부실화(추정손실)를 초래하였다.

(내) 차주 乙에 대한 대출 관련

전주동부신협은 2020.1.10. 개인사업자 丙에게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보통 대출 19억 60백만원*을 취급하고, 2021.1월경 丙에게 상기 담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였으나 丙의 신용등급이 LTV 상향 적용이 불가능한 7C 등급이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 동 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은 담보물 감정평가금액 26억 60백만원과 담보물의 담보가치인정비율(이하 'LTV') 75%가 반영된 19억 95백만원으로서 대출가능금액의 98.2%를 취급

이에 전주동부신협은 丙의 배우자인 개인사업자 乙의 신용등급이 LTV를 5%p 상향 적용이 가능한 5B+ 등급임을 이용*하여 2021.1.27. 丙의 상기 토지를 담보로 LTV를 80%로 적용하여 乙 명의로 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였다.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1A~6B+인 경우, 담보물의 LTV를 최대 5%p까지 상향 적용 가능

따라서 전주동부신협은 동 대출 심사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乙이 아닌 배우자 丙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았음에도 乙 명의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으며*, 乙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등 차주의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상환능력 등을 부실하게 심사함으로써

* 대출취급 당일 대출금은 丙에게 송금되어 담보물 관련 부채상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원리금도 丙이 대신하여 상환하는 등 실차주가 丙으로 확인

** 「여신업무방법서」 상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를 산정하여야 하며, 소득은 기장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 비기장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해야 함

해당 대출은 2022.9.28.에 연체가 시작되었고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인 1억 20백만원의 부실화(추정손실)를 초래하였다.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제84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